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49,280,000	31,478,400
일반회계		952,670,000	28,580,100
특별회계		96,610,000	2,898,300
	공기업특별회계	73,300,000	2,199,000
	수도사업특별회계	44,100,000	1,323,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200,000	876,000
	기타특별회계	23,310,000	699,300
	수질개선특별회계	5,220,000	156,6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80,000	89,4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00,000	6,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9,000	8,07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30,000	21,900
	치수사업특별회계	954,000	28,62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77,000	14,310
	주차장특별회계	12,480,000	374,4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08,62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